

<p>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 義勇消防隊는 제가 東京都 義勇消防隊活動한事項을 익히 알고서肯定的評價를 내렸습니다만 행여 이聯合會가 앞으로大統領選舉와 또 앞으로 계속 있을 여러 가지選舉에utilization되는 일이 없도록 순수한消防業務에 대한政府機關과親睦, 이러한relation에 대해서 정말熱情의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하고付託내지建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p> <p>○委員長 鞠應好 또 委員님 무슨 말씀 있으세요?</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네, 그러면 여러 委員님들의異議가 없으시고 다滿場一致로意見을 같이해주시기 때문에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動議案이可決했음을宣布합니다.</p> <p>(議事録 3打)</p>	<p>①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을 둔다. ② 의소대(부녀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 업부분장 및 정원에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7조 제1항 중 “대장은”을 “대장(의소대 및 부녀대를 말한다)은”으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p> <p>안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p> <p>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 기타 임용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p> <p>안 제13조를 삭제한다.</p> <p>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 중 “대원이”와 제5호 중 “대원의 자격으로서”를 삭제한다.</p> <p>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2조(대원의 신분증명)</p> <p>① 대원은 업무수행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p> <p>② 신분증은 의소대장(부녀대장 포함)의 경우 시장이, 대원은 관할소방서장이 발급한다.</p> <p>③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발급, 폐용에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16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p> <p>안 제18조를 제15조로, 제1항을 “대원(부녀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다)은 소방업무수행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6조(복무감독)소방서장은 당해소방서</p>
<p>(參照)</p> <p>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1조 중 “소방법 제63조 내지 제68조”를 “제86조 내지 제91조”로 하고 설치 및 운영”을 “설치, 명칭, 구역, 조직 및 운영”으로 한다.</p> <p>안 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p> <p>② 대의 표지의 규격과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6조(조직) 제1항 중 “의소대는 대장1명, 부대장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의소대 및 부녀대에는 대장1명, 부대장1명”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대원은 업무수행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p> <p>② 신분증은 의소대장(부녀대장 포함)의 경우 시장이, 대원은 관할소방서장이 발급한다.</p> <p>③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발급, 폐용에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16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p> <p>안 제18조를 제15조로, 제1항을 “대원(부녀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다)은 소방업무수행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6조(복무감독)소방서장은 당해소방서</p>

<p>의소대원(부녀대를 포함한다)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안 제20조를 제1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검열)①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소대의 검열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21조를 제18조로, 안 제22조를 제19조로 한다.</p> <p>안 제23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보수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0%로 한다.(단, 백원미만은 결사한다.)</p> <p>안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 안 제25조를 제22조로 한다.</p> <p>안 제26조를 제23조로 제1항중 “입원비”를 “입원비등 요양비”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요양비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보수년액의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근속년수의 계산은 최초임용일로부터 기산하되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간주한다.</p> <p>안 제27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항중 “별표 5”를 “별표 1”로, “별표 5-1”를 “별표 1-1”로 하고 장해보상표증 “보수년액”을 “보수년액”으로 한다.</p> <p>안 제28조를 제2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체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월액 3월분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년수</p>	<p>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p> <p>안 제29조를 제2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년액의 3년분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년수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p> <p>안 제30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항중 “제25조 내지 제29조”를 “제22조 내지 제26조”로,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6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해”를 앞에 “제해보상비는”을 삽입하고, “받은날”을 “입은날”로 한다.</p> <p>안 제31조를 제28조로하고 제1항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행정구역단위의 의소대연합회”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 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한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합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안 제32조 내지 제36조를 제29조 내지 제33조로 하고,</p> <p>안 제34조 중 “관할행정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p> <p>안 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p> <p>안 별표1 내지 별표4와 별지 1호 내지 별지 2호 서식 및 별도 1내지 별도 6을 삭제한다.</p> <hr/> <p>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感謝합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으므로 散會를 宣布합니다.</p> <p>우리 内務委員會 常任委員會는 이번 會期中에는 없고 다음 6日 本會議에 參席하실 때 다시 亂기로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事棒 3打)</p>
---	---